

소 장

원 고 O O O (OOO)

1900년 0월 OO일생

등록기준지 OO시 OO구 OO길 OO

주소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)

전화 OOO - OOOO

피 고 △ △ △ (△△△)

19○○년 ○월 ○일생

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

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
혼인무효확인 등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(2000년 00월 00일 00구청장 접수)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피고는 원고에게 금15,000,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
- 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

- 1. 피고 △△△은 원고의 스토커로 2년동안 줄기차게 원고에게 구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따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피고와의 혼인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.
- 2.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00년 00월 00일 00구청에서 혼인신고 를 하였습니다.
 - 이 사실을 모르고 원고는 소외 □□□과 ○○예식장에서 20○○년 ○월 ○일 결혼 식을 올리고 6월 뒤인 20○○년 ○월 ○일에 혼인신고를 하려던 차에 이미 피고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소외 □□□와 말다툼 끝에 서로 헤어지 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.
- 3. 이에 원고는 혼인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15,000,000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혼인관계증명서1.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1. 갑 제3호증결혼식 사진1. 갑 제4호증증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납부서1통

20 O O 년 O 일 O 일 원 고 O O O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					ō
제출법원	※ 아래참조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:	제22, 23,	24 ww .klac
제기권자	(가사소송법 제23조) ·당사자 ·법정대리인 ·4촌 이내의 친족				
상 대 방	 (가사소송법 제24조) ·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·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,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·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		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		
비 용	• 인지액 : 72,500원(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1항 - 가사소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 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) •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				송청구
혼인무효 사 유	(민법 제815조) 1.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.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(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) 3.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.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				

※ 제 출 법 원(가사소송법 제22조)

- 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2.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,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4.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
5.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